

건설업등록기준 개정에 따른 자본금 보완 안내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등록기준을 강화(2003년 8월 21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하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인 경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까지 강화된 건설업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참조하여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해 영업정지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2004년 12월 31일까지 자본금을 상향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가) 적용업종 : 2003. 8.21일 이전에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업(1종)등을 신청하여 취득한 업종

나) 자본금 개정내용

자본금	개정 전	개정 후
법인 및 개인	1억원	2억원

다)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라) 참조

- 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및 건설교통부 고시(제2001-223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②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한 동안은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납입(불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하여야 함(건경58070-417호 2000년 3월 28일).
- ③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의미함.

[건설업등록기준 상향조정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 별표 2

□ 일반건설업

○ 중급기술자(기사포함) 1~2인, 자본금 2억(개인은 4억) 추가

업종	변경 전	변경 후
토목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관련기술자 6인(중급 2인), 7억
건축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	관련기술자 5인(중급 2인), 5억
조경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관련기술자 6인(중급 2인), 7억
토건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10억	관련기술자 12인(중급 4인), 12억
산업설비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10억	관련기술자 12인(중급 6인), 12억

※ 자본금은 납입·실질 모두 해당

○ 경력임원 의무고용 규정 삭제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 보유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불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

※ 자본금은 납입·실질 모두 해당

○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 상향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 이상(적재 하중 10톤 이상), 타이템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중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등

□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건설업자: 자본금(납입·실질), 기술자 사항은 2004년 12월 31일(철도·궤도사업의 시설장비 기준은 1003년 12월 31일)까지 충족, 경력임원은 2003년 12월 21일까지 의무 고용.

○ 신규등록업자: 개정안 적용